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륙,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 경과 시 안내의무 신설〉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80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2213980)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이륙,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 경과 시 안내의무 신설(안 제61조의2 제2항)	3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221398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선원 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6.
3. 회 부 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그런데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1. 이륙,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 경과 시 안내의무 신설 (안 제61조의2제2항)

개정안은 이륙에 소요되거나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체없이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30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30분마다 이를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① (생략)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u>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u>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u>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u>	② ----- ----- ----- <u>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u> <u>는 지체 없이</u> ----- ----- <u>그</u> ----- ----- <u>하며,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30분마다 이를 알려야 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61조의2는 탑승 중인 승객의 장기간 기내 대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¹⁾

활주로·유도로 및 계류장 등 이동지역에서 3시간(국내항공운송) 또는 4시간(국제항공운송)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고,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매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²⁾

1) 법률 제16642호, 2019.11.26. 일부개정

2)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재난·재해·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항공운송: 3시간

2. 국제항공운송: 4시간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그러나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은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지역에서 지연된 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도 이륙 또는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된 경우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현행법 제84조제1항은 제6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³⁾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연사유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와 이용편익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항공사업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1조의2제2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다만, 현행 규정은 “30분마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륙에 소요되거나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은 항공기 기종별, 공항별, 노선별로 달라질 수 있는 등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하여 오히려 승객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항공운송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규제 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도 30분 경과 시점마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현행 규정에 비해 어느정도 추가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항공업계에서는 통상적인 시간이 불명확하여 항공사는 언제 승객에게 정보를 제공할지, 승객은 언제 정보를 받을지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고, 업무 혼선 및 조종사 업무부담 증가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교통이용자 불안 해소 등 입법취지는 이해되나, 항공 운항은 공항별, 노선별, 기상, 공역상황, 공항혼잡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운항시간이 결정되어 적절한 통상시간 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통상시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항공사 간 해석상 혼란, 예측가능성 저하 등 법적안정성 저해, 기존 제도와 중복으로 인한 실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항공업계 의견

통상적인 시간이 불명확하고 항공사는 언제 정보를 제공할지, 승객은 언제 정보를 받을지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며, 이로인한 혼선 및 조종사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안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